

#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-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하여 안전점검업체 관리체계 일원화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「시설물안전법」) 개정안이 12월 20일(수)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「시설물안전법」상 안전점검을 대행 가능한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을 신설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로 분리되어 있던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.
  - 기존에는 「시설물안전법」상 안전진단전문기관 외에도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하나인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을 대행해왔다.
  - 그러나, 앞으로는 안전점검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「시설물안전법」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나 자격요건이 더 높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변경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\*한다.
- \* (유지관리업자<sup>폐지</sup> → 안전점검전문기관<sup>신설</sup>) 안전점검 대행 가능  
(안전진단전문기관<sup>현행유지</sup>) 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, 성능평가 대행 가능
-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라 업종을 전환한 종전 유지관리업자\*는 법 시행 후에도 1년간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다. 단, 안전점검을 계속해서 대행하기 위해서는 시행 후 1년이 지나기 전 등록기준을 갖추어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신규 등록하여야 한다.
  - \* 현재 유지관리업자는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라 '23.12.31까지 다른 업종(종합·전문)의 건설사업자로 업종전환을 해야만 하며, 업종전환 기간이 지나면 유지관리업자 자격은 소멸
- 「시설물안전법」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,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새로 신설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	책임자	과장	문봉섭 (044-201-4598)
		담당자	사무관	송하윤 (044-201-3587)



□ **안전점검전문기관 신설**

현 행	개정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28조의2(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)                     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변경등록, 등록증의 발급·재발급, 휴업·재개업·폐업신고, 결격사유, 명의대여의 금지 및 영업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28조(제28조제1항은 제외한다), 제29조, 제30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안전진단전문기관"은 "안전점검전문기관"으로, "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"는 "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"으로 본다.</p>

□ **안전점검전문기관의 안전점검 대행\***

\* (유지관리업자<sup>폐지</sup> → 안전점검전문기관<sup>신설</sup>) 안전점검 대행 가능  
 (안전진단전문기관<sup>현행유지</sup>) 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, 성능평가 대행 가능

현 행	개정안
<p>제26조(안전점검등의 대행)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,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,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국토안전관리원,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,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④ (생 략)</p>	<p>제26조(안전점검등의 대행) ①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안전점검전문기관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안전점검전문기관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